

법률자문 회신

의뢰부서	예산담당관			회신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2017. 5. 11.
팀 장	김미정	6807		
	정한섭	6841		
건 명	대기오염 개선 목적으로 대중교통비를 일시적으로 무료화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 또는 기후변화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p>○ 재난관리기금 사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관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제1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1호)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으로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안에서와 같이 <u>자동차 운행제한 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 재난에 해당하는 대기오염 관리 목적의 사업으로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u> - 다만 위 사업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열거·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u>위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1777, 2017. 4. 28. 본회의 가결)에 따르면,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서 신설된바(안 제5조제2항제10호), 개정조례 시행일(2017. 5. 18. 공포·시행 예정) 이후에는 위 신설규정을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u> <p>○ 기후변화기금 사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목 			

적으로 설치된 기후변화기금의 경우(조례 제1조),

- 같은 조례 제5조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제1호),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1호) 등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제6조제1항에서 제5제1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안의 대중교통비 일시적 무료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은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촉진 등의 기후변화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내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조례 제5조제1호·제11호),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조례 제6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

- 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1.5., 2007.3.8., 2009.11.11., 2013.5.16.>

제5조 (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1.11.>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7., 2013.5.16., 2017.3.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승가뭇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 8.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4., 2014.1.9., 2014.10.2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 1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 1의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 개보수 및 신규건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용자
6. 노후된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비용에 대한 용자
7.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공급하는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
8.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법률지원 1팀	성명	전화	이메일
과장	정석윤	6755	ngsyoon@seoul.go.kr
팀장	조미숙	6710	mscho888@seoul.go.kr
담당변호사	조어진	6713	ujjo15@seoul.go.kr